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관계법규의 준수) ④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코스피200옵션선물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약받은 재산으로 코스피200옵션선물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관계법규의 준수) ④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코스피200옵션선물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약 받은 재산으로 코스피200옵션선물에 대한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구 수정
제4조(파생상품계좌의 신고 등)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장개시전 협의거래를 통하여 코스피200옵션을 매매하기 위하여 회사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파생상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파생상품계좌의 신고 등)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장개시 전협의거래를 통하여 코스피200옵션을 매매하기 위하여 회사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거나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파생상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제5조(위탁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팩스(Fax)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생략)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코스피200옵션선물 및 코스피200옵션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팩스(Fax)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현행과 같음) ③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코스피200옵션선물 및 코스피200옵션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별첨 삭제
제6조(수탁의 거부)	제6조(수탁의 거부)	자구 수정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거래 ④ 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④ 회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의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2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파생상품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파생상품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구 수정 및 별첨 순번 변경 자구 수정
제8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의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생상품계좌에 위탁증거금[홈페이지(이용안내 가이드) > 증권업무 가이드 > 선물투자)참고]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 3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탁증거금 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유렉스(Eurex) 시장 중	제8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의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 내한 위탁증거금[홈페이지(이용안내/문의) > 이용안내 가이드 > 증권업무 가이드 > 선물투자) 참고]을 미리 파생상품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 2>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자구 수정 및 별첨 순번 변경 자구 수정 및 별첨 순번 변경

료 후 두 번째 한국거래소 거래일의 10시 이내에서 별첨 4에서 정한 시간까지 한국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약할 수 있다.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유렉스(Eurex) 시장 종료 후 두 번째 한국거래소 거래일의 10시 이내에서 〈별첨 3〉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부족 또는 추가예탁의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코스피200옵션선물의 매매시간 종료 후 첫 번째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에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예약되어 있는 위탁증거금 평가예탁총액이 별첨 5에서 정한 유지증거금보다 낮아 코스피200옵션의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하기에 부족한 경우 같은 날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첫 번째 영업일의 07:30까지 부족금액을 추가 예약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코스피200옵션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③ 고객은 제2항에 따라 유렉스청산기관으로부터 제2항의 손실 및 비용을 부과 받은 경우 별첨 6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부족 또는 추가예탁의 불이행시의 조치) ①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의 매매시간 종료 후 첫 번째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에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예약되어 있는 위탁증거금 평가예탁총액이 〈별첨 4〉에서 정한 유지증거금보다 낮아 코스피200옵션의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하기에 부족한 경우 같은 날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첫 번째 영업일의 07:30까지 부족금액을 추가 예약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코스피200옵션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③ 고객은 제2항에 따라 유렉스청산기관(ECAG)으로부터 제2항의 손실 및 비용을 부과 받은 경우 〈별첨 5〉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및 별첨 순번 변경 자구 수정 및 별첨 순번 변경
제10조(코스피200옵션선물의 결제대금의 납입) ①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결제대금을 최종거래를 위한 장개시전협의거래 후 별첨 7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원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매도 : (매도가격 - 최종결제가격) × 매도수량 2. 매수 : (최종결제가격 - 매수가격) × 매수수량	제10조(코스피200옵션선물의 결제대금의 납입) ①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결제대금을 최종거래를 위한 장개시전협의거래 후 〈별첨 6〉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원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매도 : (매도가격 - 최종결제가격) × 매도수량 × 거래승수 2. 매수 : (최종결제가격 - 매수가격) × 매수수량 × 거래승수	별첨 순번 변경 거래승수 추가
제12조(수탁현금잔고 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 등에서 발생한 과실 (果實)에 대하여 별첨 8 에서 안내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지급기준에 따라 과실 (果實)을 지급한다.	제12조(수탁현금잔고 등에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안내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지급기준에 따라 수익을 지급한다.	표준약관 내용과 동일하게 자구 수정 및 별첨 삭제

제13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14조(비상시의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 및 결제에 관한 사항) ② 유렉스(Eurex)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유렉스(Eurex)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4조(비상시의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 및 결제에 관한 사항) ② 유렉스(Eurex)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유렉스(Eurex)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유렉스(Eurex)시장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하여 고객이 위탁하고자 한 수량과 회사가 유렉스(Eurex)시장으로부터 수신한 장개시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의 수량이 다를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자구 수정 표준약관 내용과 동일하게 문구 추가
제18조(수수료 등 비용)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 수수료 등(거래소이용료 등 비용 포함)은 별첨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 등 비용)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 수수료 등(거래소이용료 등 비용 포함)은 〈별첨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순번 변경
제19조(약관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	제19조(약관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	자구수정

일 전에 게시한다.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제20조(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서 기재내용 변경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타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서 적힌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제20조(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서 기재내용 변경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그 밖의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서 적힌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자구수정
제23조(분쟁조정)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조항 추가로 인해 내용 분리
제22조(기타)	제24조(관계법규등 준용)	조항 변경

가. 제5조5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0년	-	삭제
나. 제7조제1항에의 별첨 2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기본예탁금 차등적용 가) 리스크가 없는 계좌는 기본예탁금 면제(사후증거금 적용계좌) 나) 고객 요청 및 당사 적용 기준에 따라 기본예탁금 500/ 2,000/ 3,000만원 적용 다) 리스크 관리 대상 고객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 적용 기준에 따라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 적용하거나 수탁거부 적용 2)기본예탁금 적용 업무 가)계좌개설시 또는 계좌 개설 후 변경 - 고객요청 및 당사 적용 기준에 따라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	가. 제7조제1항에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기본예탁금 차등적용 가) 리스크가 없는 계좌는 기본예탁금 면제(사후증거금 적용계좌) 나) 고객 요청 및 당사 적용 기준에 따라 기본예탁금 500만원/2,000만원/3,000만원 적용 다) 리스크 관리 대상 고객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 적용 기준에 따라 기본예탁금 3,000만원/5,000만원/1억원 적용하거나 수탁거부 적용 2)기본예탁금 적용 업무 가) 계좌개설시 또는 계좌 개설 후 변경 - 고객요청 및 당사 적용 기준에 따라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	별첨 순번 변경 및 기본예탁금 기준 변경

구분	조건	기본예탁금		
		기존계좌*	선물상품** 및 옵션매수	모든 선물옵션
1단계	일반(신규)계좌 및 고객등급 Bronze 고객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단계	고객등급 Silver 이상의 고객 요청 혹은 자동 적용***	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 단, 기존계좌*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예탁금 1,500만원 기준 적용

*일정요건 : 제도 시행일(2014.12.26) 이전 개설된 계좌 중 장중미결제를 포함한 미결제약정의 보유일수가 20거래일이상인 경우

**변동성지수선물을 제외한 선물상품 거래만 해당

구분	조건	기본예탁금		
		기존계좌 ^{주1)}	선물상품 ^{주2)} 및 옵션매수	모든 선물옵션
우대	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있는 계좌 & 최근 2개월 반대매매 누적횟수 2회 이하인 계좌를 계좌단위로 적용	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기본	우대 및 강화를 제외한 계좌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강화	반대매매 연속횟수가 3회 이상인	3,000만원	5,000만원	10,000만원

***매월 2일(휴일 순연) 일일정산 시점에 고객등급이 Silver 이상인 경우 기본예탁금을 자동으로 우대하며, 미결제 잔고가 없고 고객등급이 Bronze 인 경우 기본예탁금을 자동으로 기본(강화)으로 전환 처리 ※ 반대매매 연속횟수가 3회 연속(계좌기준)인 경우 해당 고객의 모든 선물옵션계좌의 기본예탁금 유형을 3단계로 강화(반대매매 정의 : 반대매매 주문 발주시점 추가증거금 미해소 상태인 경우)	<table><tr><td>계좌를 고객단위로 적용^{주3)}</td><td></td><td></td><td></td></tr></table> ※ 단, 기존계좌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예탁금 1,500만원 기준 적용 주1) 일정요건 : 제도 시행일(2014.12.26) 이전 개설된 계좌 중 장중미결제를 포함한 미결제약정의 보유일수가 20거래일이상인 경우 주2) 변동성지수선물을 제외한 선물상품만 해당 주3) 반대매매는 주문 발주시점 추가증거금 미해소 상태인 경우이며, 반대매매 연속횟수가 3회 연속시 고객단위 (고객의 모든 선물옵션계좌의 기본예탁금 유형 강화)로 적용	계좌를 고객단위로 적용 ^{주3)}				
계좌를 고객단위로 적용 ^{주3)}						
다. 제8조제1항의 별첨 3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선물매수의 경우 매수대금 전액 - 선물매도의 경우 [위탁수량 × 거래승수 × (최대옵션위탁증거금이론가격과 매도옵션조정위탁증거금이론가격중 높은 이론가격 - 옵션위탁증거금 기준가격)]	나. 제8조제1항의 <별첨 2>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옵션선물 매수 : 지정가 × 주문수량 × 거래승수 - 옵션선물 매도 : Max[옵션가격변화분 × 거래승수, 최소증거금] × 주문수량	별첨 순번 변경 및 계산산식 문구 변경				
라. 제8조제2항의 별첨 4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두 번째 한국거래소 거래일의 10:00	다. 제8조제2항의 <별첨 3>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0시	별첨 순번 변경 및 자구수정				
마. 제9조제1항의 별첨 5에서 정하는 유지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유지증거금률 6%	라. 제9조제1항의 <별첨 4>에서 정하는 유지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유지증거금은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공지/이벤트 >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별첨 순번 변경 및 홈페이지로 경로 안내				
바. 제9조제3항의 별첨 6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마. 제9조제3항의 <별첨 5>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별첨 순번 변경 및 자구수정				
사. 제10조제1항의 별첨 7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바. 제10조제1항의 <별첨 6>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별첨 순번 변경				
아. 제12조제1항의 별첨 8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기시작월 둘째주 마지막영업일(1, 4, 7, 10월)에 예탁금이용료 지급	-	삭제				
자. 제18조 별첨 9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거래금액에 오프라인 1%,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는 온라인 0.2%, 지점 외 개설한 계좌는 온라인 0.15% 를 곱한 금액	사. 제18조 <별첨 7>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신규) 영업점 : 온라인 0.2%, 오프라인 1% - (신규) 다이렉트 : 온라인 0.15%, 오프라인 1%	별첨 순번 변경 및 자구수정				

- (구)미래에셋대우 계좌 : 거래금액에 온라인 0.3%(단, 다이렉트HTS 0.15%), 오프라인 1%를 곱한 금액 - (구)미래에셋증권 계좌 : 거래금액에 온라인 0.2%, 오프라인 0.995% 를 곱한 금액	- (구)미래에셋대우 계좌 : 온라인 0.3%, 오프라인 1% - (구)미래에셋증권 계좌 : 온라인 0.20%, 오프라인 0.995%	
--	--	--